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5. 8. 28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8월 14일

나. 발의자: 최봉희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5년 8월 21일

라. 상정일자: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8. 26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최봉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를 활성화하고, 기부식품등을 판내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- 구청장 및 제공자·사업자의 책무 (안 제4조~제5조)
-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(안 제6조)
-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(안 제7조)
-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위탁 (안 제8조)
- 보조금 지원 (안 제9조)
- 지도·감독 및 실태조사 (안 제11조~제12조)
- 교육·홍보 (안 제1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류데레사)

□ 제정 배경 및 취지

- 최근 고용시장 침체와 물가 상승 등 사회·경제적 여건 악화로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에 따라 기부를 통한 사회안전망 보완과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.
- 한편,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식품등 기부와 제공사업을 지원·장려하기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.
 -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16개 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함.
- 이에 본 조례안은 기부문화 확산과 안정적 기부활동 지원을 위해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□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2조(정의)는 ‘식품등’, ‘기부식품등’, ‘기부식품등 제공사업’ 등 주요 용어를 규정하여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확보함.
- 안 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기본 조례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함.
- 안 제4조(구청장의 책무)는 법 제7조에 따라 시책마련 및 예산확보에 관한 구 청장의 책무를 적정히 규정함.
- 안 제5조(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)는 기부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법 제5조에 따라 규정함.
- 안 제6조(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)는 무상제공, 공정·투명한 배분과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제공원칙을 명시하여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.
- 안 제7조(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)는 구청장이 매년 활성화 계획을 수립 하여 사업 활성화 및 지원, 관리·운영 방안, 지도·감독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담보하고자 함.
- 안 제8조(제공사업 위탁)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- 안 제9조(보조금 지원)는 법 제7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.
- 안 제10조(협조요청 등)는 학교, 종교시설, 공공단체, 기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결연을 통해 기부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.
- 안 제11조(지도·감독)는 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지도·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12조(실태조사)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안 제13조(교육·홍보)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기부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.
- 안 제14조(표창)는 식품 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·법인·단체를 표창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 참여를 장려하고자 함.

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·장려 의무를 구체화하였으며,
 - ▲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▲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▲보조금 지원 ▲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기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체계화함.
-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식품등 기부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, 기부 활동이 단순 물품 전달을 넘어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 확산과 사회공동체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(최봉희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80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8.

발 의 자: 최봉희·임현호·전승관
정선희 의원 (4인)

1. 제안이유

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를 활성화하고, 기부식품등을 관내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 및 제공자·사업자의 책무 (안 제4조~제5조)
- 다.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(안 제6조)
- 라.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(안 제7조)
- 마.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위탁 (안 제8조)
- 바. 보조금 지원 (안 제9조)
- 사. 지도·감독 및 실태조사 (안 제11조~제12조)
- 아. 교육·홍보 (안 제13조)

3. 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기존 예산으로 사업 일부 추진 중이며,
향후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 추가 반영 필요
- 다. 입법예고: 생략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,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식품등”이란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.
2. “기부식품등”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.
3. “기부식품등 제공사업”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.
4. “이용자”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.
5. “제공자”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.
6. “사업자”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

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 ·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)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 · 제공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)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.

1. 이용자에게 무상제공
2.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
3. 기부식품등의 확보량, 소비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, 이용횟수 등 조정
4.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

제7조(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)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 · 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
2.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 · 운영 방안
3.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 · 감독
4.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위탁) 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의 관리 ·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9조(보조금 지원)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1. 공공요금,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
2.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, 냉장 · 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, 냉장 · 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
3.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
4.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 · 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
5.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
경우

-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0조(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)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, 종교시설,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지도 · 감독 등)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[법 제5조 제2항](#)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 · 감독을 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 ·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2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3조(교육 · 홍보) ① 구청장은 사업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

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이 포함된 식품위생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4조(표창)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·단체·개인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